

프린터/복합기 임대차 계약서

하나렌탈 (이하 "임대인"이라 한다. 사업자번호 125-18-79136 / 대표번호 1599-8168 대표: 이동식) (인)

(이하 "임차인"이라 한다) 다음과 같이 프린터/복합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.

2023 년 월 일

임차인	상 호	대 표 자	
	사 업 자 번 호	TEL :(대표 번호)	
	주민 등록 번호	H P :(대 표 님)	
	주 소		

[제 1조] 임대차 계약의 정의

프린터/복합기 임대차 계약이란 "임차인"이 "임대인"으로부터 임대한 프린터/복합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"임대인"은 디지털복합기의 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등을 행하며, "임차인"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차료를 "임대인"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.

[제 2조] 대상 프린터/복합기 및 임차료

(부가가치세 별도)

기 종	일련번호	계 시 메 타	기 본 요 금	계 약 매 수	추가금액(장당/월)
		-	원/월	<후백> 매 - <컬러> 매	<후>>10 <컬>>100
		-	원/월	<후백> 매 - <컬러> 매	
		-	원/월	<후백> 매 - <컬러> 매	

보증금 :

계좌번호 : **우리은행 1002-030-582872**

일할계산요금(첫달) :

예 금 주 : 이동식(하나렌탈)

계약매수는 커버리지 20%이하 문서를 기준으로 한다

[제 3조] 계약기간

-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 계산 개시일로부터 만 _____ 개월로 한다.
-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해지통보가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**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**되는 것으로 한다.

[제 4조] 임차료의 지불

- 임차료는 매월 28 일에 자동이체(CMS)로 지급한다.
- "임차인"이 임차료 지불을 **2달 이상 지체한 때에는** "임대인"은 계약파기 및 기기회수, 위약금을 청구할수 있다.

[제 5조] 임차료의 계산

- 임차료 계산은 아래 표와 같이 출력매수가 월 후백 _____ 매, 컬러 _____ 매까지는 월 금 _____ 원(부가세별도)으로 하고, 기본 출력매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후백출력매수에 _____ 원을 곱하고, 컬러출력매수에 _____ 원을 곱한 합계 금액(부가세별도)을 추가 임차료로 한다.

월 임차료= 원 + {(후백 매 초과 출력매수 × 원) + (컬러 매 초과 출력매수 × 원)}

- "임대인"의 보수점검 중 사용한 테스트복사 및 본 제품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출력은 요금계산 시 이를 공제한다.
- "임차인"은 "메타연락표"를 매월 "임대인"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"임대인"은 송부된 "메타연락표"에 의하여 요금을 계산한다.
- 임차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기본매수가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월은 일할 계산으로 하며 최종월은 기본요금으로 계산한다.

[제 6조] 보증금

- "임차인"은 "임대인"에게 계약 장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 및 이체로 **설치 당일 지급**을 원칙으로 한다.
-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에 "임대인"은 "임차인"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. 단, "임차인"의 "임대인"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증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.

[제 7조] 보수 SERVICE

- 보수 SERVICE, 소모품 제공 등 일체의 작업실시는 "임대인"의 영업시간 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"임차인"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수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"임대인"이 소정의 SERVICE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.
- "임대인"은 "임차인"에게 프린터/복합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SERVICE 한다.
- "임대인"의 영업시간은 국경일, **토,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9시 ~ 오후5시**로 한다.

[제 8조] 소모품

- (1) “임대인”은 “임차인”이 프린터/복합기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량의 소모품을 부품, 소모품 견적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“임차인”에게 유상/무상으로 공급한다.
- (2) 위 소모품의 소유권은 “임대인”에게 있고, “임차인”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·사용 하여야 한다.
- (3) “임차인”은 위 소모품이 “임대인”의 소유임을 표시한 표식을 훼손 또는 “임차인”임의의 매각, 대여, 유영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4) 위 소모품을 해당 계약 프린터/복합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- (5) 보수 SERVICE시에 교환된 소모품, 부품 등은 “임대인”이 이를 회수한다.
- (6) “임차인”은 압류, 가압류, 공조·공과와 체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은 “임대인”에게 통지하고 “임대인”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[제 9조] 설치장소의 변경

- (1) “임차인”은 프린터/복합기를 최초 설치장소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(2) 고객의 이사요청시 복사기는 10만, 소형복합기는 5만원을 청구한다.
- (3) 고객사 이전시 고객이 렌탈상품을 직접 옮겨간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 출장비는 청구하지 않는다.

[제 10조] 사용목적의 변경

- (1) “임차인”은 프린터/복합기로 복사사용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“임대인”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“임대인”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[제 11조] 계약항목의 변경

- (1) 본 계약의 조항 변경을 요하는 때에는 1개월 전의 “임차인”·“임대인”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(2) “임차인”·“임대인”간에 협의로 기본요금을 상향한 경우 1년간 하향 조정할 수 없다.

[제 12조] 해지

- (1) “임차인”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에정일 1개월 전에 전화/문서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(2) “임대인”은 “임차인”에게 다음 가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전화/문서로 통지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단, 회생절차개시나 파산·해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①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. ②당좌거래 정지처분이 있을 때
③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, 공과와 체납처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어 계약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.
- (3)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때에는 “임차인”은 “임대인”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, 계약기계 및 잔여 소모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(4) “임차인”은 “임대인”의 귀책사유가 없이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 해지 할 경우에는 “임대인”에게 임대차계약에서 규정한 잔여 임대차 기간에 **직전 3개월 평균 임대료**(이하 ‘월 기본 임대료’라 함)를 곱한 금액(**잔여 임대차 기간 × 월임차료, 부가세별도**)의 **30%**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
[제 13조] 신용정보 제공의 동의

- (1) “임대인”은 “임차인”이 “임대인”에게 제공한 “임차인”의 고객정보를 거래정보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할 목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정보업자,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“임차인”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다.
- (2) “임대인”은 전항의 고객정보 및 거래정보의 처리 및 저장업무를 국내 또는 해외의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그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임차인의 본사, 자회사 및 계열사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다.

[제 14조] 손해배상

- (1) “임차인”은 본 계약 조항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“임대인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- (2) “임차인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전기(煎記) 프린터/복합기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“임차인”은 “임대인”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[제 15조] 소유권의 귀속 및 양도 등 금지

- (1) “임대인”이 “임차인”에게 임대한 프린터/복합기 및 소모품은 “임대인”의 소유임을 확인한다.
- (2) “임차인”은 프린터/복합기 및 소모품을 무단양도, 절권, 설정, 양도담보, 대여, 전대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(3) “임차인”은 “임대인”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발생시(가압류, 압류, 가처분, 공과금 체납에 의한 처분 등)즉시 “임대인”에게 통지하고 “임대인”의 소유재산임을 알리고 입증하여야 한다.

[제 16조] 기타

위 각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.

[제 17조] 합의 관할

“임차인” · “임대인” 간 본 계약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의 규정에 따르되, “임대인”의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소 할 수 있다.